## KOSHA GUIDE C - 54 - 2012

- (2) 굴착공 내부 작업 근로자에게는 방진마스크, 보안경, 송기마스크 등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상태를 관리하여야 하며, 근로자는 지급된 보호구를 바르게 착용하여야 한다.
- (3) 굴착공 내부로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반드시 산소농도 (18% 이상) 및 가연성 가스의 유·무를 확인한 다음 근로자를 투입하여야 한다.
- (4) 굴착공 내부에서는 내연기관이 내장된 기계 기구의 사용을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, 부득이한 경우에는 질식재해 방지를 위한 충분한 환기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.
- (5) 지상에 설치한 송풍기 등의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굴착공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6) 굴착공 내부에서 작업하는 동안에는 송풍기를 상시 운전하고, 배출구에 깃발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.